

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시장 승인된 문경관광진흥공단
인사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1. 09. 08.

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

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제226호

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

문경관광진흥공단 인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2 제3항을 “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, 정직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”로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시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 2(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) ① ~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5조의 2(인사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이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, 정직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.</u>